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65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문대림 · 김성범 · 윤준병
김동아 · 이주희 · 주철현
김준혁 · 송옥주 · 남인순
朴芝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말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말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사람이 말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말이 출생한 경우
2. 등록되지 아니한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3. 말을 수입한 경우

③ 말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말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2. 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말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린 말을 찾은 경우

4. 말을 수출한 경우

5. 말이 죽은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말의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말

2. 국내에서 사육 중인 당나귀, 노새, 버새

⑥ 등록기관은 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말 소유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경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말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말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말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u>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제7조(말의 등록) ① ----- ----- ----- ----- ----- <u>지정하여야 한다.</u> ② <u>말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말을 등록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여러 사람이 말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u> <u>1. 말이 출생한 경우</u> <u>2. 등록되지 아니한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u> <u>3. 말을 수입한 경우</u> ③ <u>말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말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
우

2. 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말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린
말을 찾은 경우

4. 말을 수출한 경우

5. 말이 죽은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말
의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말

2. 국내에서 사육 중인 당나귀,
노새, 버새

⑥ 등록기관은 제3항제4호 또

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는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말 소유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경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다.

⑦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

-----.